

퇴직 후 업무취급제한제도란? (법 제18조의2)

- ✓ 취업심사를 받고 재취업했다라도, 재직 중 재정보조, 인·허가 등 업무를 직접 처리했다면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제한됨 (직급 및 재산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에 해당)
- ✓ 특히,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업무 외에도 퇴직 전 2년간 소속기관이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대해 처리한 취급제한 업무를 맡는 것이 제한됨
- ✓ 다만,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심사를 받아 국가안보·공익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업무 취급 가능함

업무취급 승인 대상 업무는?

| 본인업무기준 심사대상자 (재산등록 여부 무관·직급 무관 모든 공직자)

→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'취급제한 업무'

|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 (2급 이상)

→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'취급제한 업무' + 퇴직 전 2년간 소속기관이 취업예정기관 (심사대상기관)에 대하여 처리한 '취급제한 업무'

업무취급 승인심사

- 업무취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
- 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서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
 - ②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경우 취급이 가능

업무취급제한제도 위반시?

(법 제29조제2호, 제30조제1항·제3항)

1)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'취급제한 업무'를 취급한 경우

- 고발여부 심사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↳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(시행령 제19조제2항)


2)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'취급제한 업무'를 취급한 경우


- 위반사실 법원 통보 :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
취업심사 vs 업무취급 승인심사


구분	취업심사	업무취급 승인심사
심사 목적	취업 가능여부	업무취급 가능여부 ※ 취업 또는 개업 여부와 무관
신청 시기	취업개시 30일 전	제한업무 취급 전 (취업 전 또는 후 모두 가능)
심사 대상자	일부 공직자	모든 공직자 (공무원 + 공직유관단체 임직원)
	① 부서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취업예정인 3급 이하 공무원 등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취업예정인 2급 이상 공무원 등	① 본인 처리업무 심사대상자 모든 공직자 ② 기관업무 심사대상자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/취업예정인 취업심사 대상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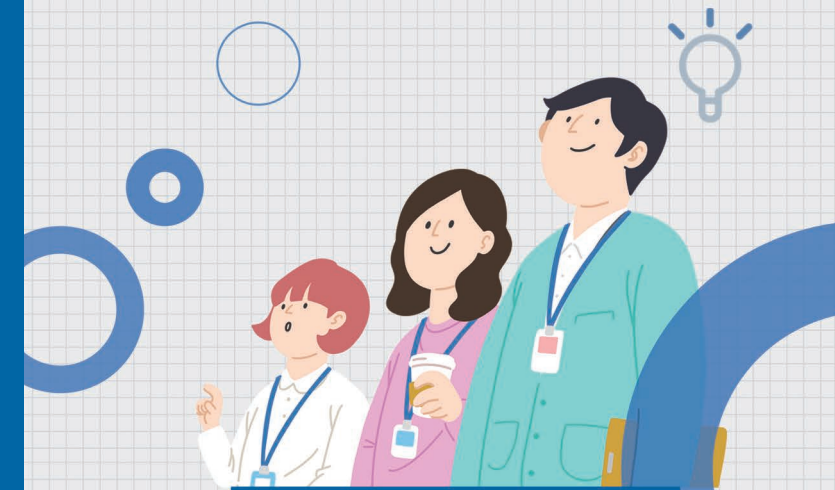
기준일 : 퇴직일(또는 의무면제일)

모든 공직자  영구 (본인업무 취급제한)

취업심사대상자  3년 (취업제한)

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2년 (기관업무 취급제한+업무내역서 제출의무)

 10년 (취업사실신고 의무 + 취업이력공시)



한 눈에 보는

퇴직공직자

취업제한(취업심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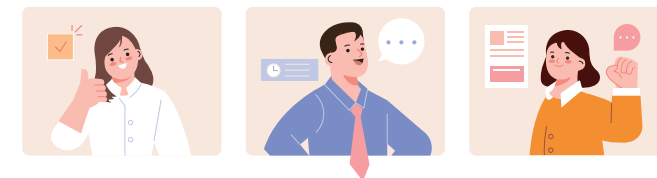
업무취급제한 *

(업무취급승인심사)



퇴직공직자 취업제한(취업심사)제도란?

- ✓ 일부 공직자가 퇴직한 후 3년간 공직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
- ✓ 단,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
 - ① 취업제한여부에 대해 확인받거나
 - ②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함



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

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(심사대상기관) 간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
→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

취업승인 심사

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승인
→ 취업승인사유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취업승인

[참고] 취업승인사유(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)

- ① 국가안보 또는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업이 필요한 경우
- ② 직제 폐지,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
 - ※ 기관 내부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
- ③ 국가, 자치단체 출자 또는 재출자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경우
- ④ 기술자격증소지자로 당해 산업발전,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경우
- ⑤ 법령 또는 법원결정으로 기업체의 관리인, 임직원으로 선임된 경우
- ⑥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임용되었다가 임용 전 종사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
- ⑦ 본인 담당업무와 관련이 없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
- ⑧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·비중·빈도와 취업 후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
- ⑨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

취업이란? (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)

직책·계약의 형식*과 상관없이

* 사외이사, 고문, 자문, 비상임이사 등

취업심사대상기관의

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안·자문 등 지원을 하고

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대가*를 받는 경우

* 기타소득, 근로소득 등

취업심사대상기관이란? (법 제17조제1항, 영 제33조)

공직유관단체
(1,391개)

- 한국은행
- 한국예탁결제원
- 한국방송공사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
- 군인공제회 등

취업심사대상
공직유관단체
(253개)

- 한국소방시설협회
- 대한산업안전협회
- 부산항보안공사
- 도시관리공단 등

취업심사대상기관
(22,498개)

영리분야

- 영리사기업체
- 법무·회계·세무법인
-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, 협회

비영리분야

- 시장형공기업
- 안전감독·인허가규제, 조달업무 공직유관단체
- 사립대학 등
- 종합병원 등
- 사회복지법인 등

특정분야

- 합작법무법인
- 초·중등 사립학교 등
- 방위산업분야
- 식품·의약품 등

공공기관
(347개)

- 한국마사회
- 국민연금공단
- 기술보증기금
- 한국관광공사
- 정부법무공단 등

취업심사대상
공공기관(97개)

- 한국가스공사
- 한국수자원공사
- 근로복지공단
- 도로교통공단
- 한국원자력연구원 등

[참고] 취업심사대상 공공기관(23년) : 97개

구분	'23년 공공기관	취업심사대상 공공기관		
		계	시장형 공기업, 안전감독, 인·허가규제, 조달업무 수행	종합병원, 사립대학, 국민안전 관련 인증·검사 기관
계	347	97	75	22
① 공기업	32	22	22	-
시장형	13	13	13	-
준시장형	19	9	9	-
② 준정부기관	55	16	16	-
기금관리형	11	1	1	-
위탁집행형	44	15	15	-
③ 기타공공기관	260	59	37	22

업무관련성 판단 범위는? (법 제17조제1항, 영 제32조)

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

Q.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란?

I 부서업무기준 심사대상자 (3급 이하)

→ 소속 직원의 경우 : 해당 과

→ 과장 이상 : 지휘·감독하는 부서

ex) 과장의 경우 과, 국장의 경우 국

II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 (2급 이상)

→ 본부·본청 소속 : 본부·본청 + 소속기관 업무까지

ex) 인사처 재직 시 : 인사처,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, 소청심사위원회

→ 소속기관 소속 : 소속기관 + 그 하급기관 업무까지

ex) 소청심사위원회 재직 시 : 소청위 업무만(인사처 업무 제외)

※ 취업심사대상자(영 제31조제1항)

1. 정무직(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, 국회의원, 지자체장, 지방의원, 교육감 등)
2. 4급 이상, 5급(국방부, 방사청 방위력개선·국방계약·군사법원·군검찰·감찰 등)
3. 5급 이하 7급 이상(감사원, 국세청, 관세청, 공영위 소속 공무원, 법무부·검찰청 소속 검찰직 및 마약수사직 공무원, 권익위 부패방지국·심사보호국 소속 공무원, 식약처 식품위해사범 수사부서, 감사업무 담당부서, 회계부서 회계관직 공무원, 건축·토목 등 인허가·검사·감독, 지자체 조세관련 부서 등)
4. 공직유관단체 임원(공기업의 장·부기관장·상임이사·감사, 한국은행 총재·부총재·감사 및 금통위 추천위원, 금감위 원장·부원장·부원장보 및 감사, 농협중앙회·수협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, 공직유관단체 상근 임원)
5. 공직유관단체 직원
 -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(국과연, 기품원의 경우 수석급 이상)
 - 2급 이상 : 한국은행, 예금보험공사, 금융감독원, 한국토지주택공사, 공직유관단체 직원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
 - 4급 이상 : 금융감독원

※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(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령 제32조)

1. 재산공개대상자(법 제10조제1항)
2. 고위공무원 중 위 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
3. 2급 이상 공무원
4.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특정 공직유관단체 1급(상당) 이상 직원*
 - * 한국은행, 예금보험공사, 금융감독원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원자력환경공단, 한국원자력연료, 한국전력기술, 한국전력공사(원전분야), 한전KPS(원전분야)의 1급 이상 직원
5. 고등검찰청 부장검사, 지방검찰청 차장검사,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,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,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

취업심사시 밀접한 업무관련성? (법 제17조 제2항)

Q. 밀접한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?

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취업하려는 기관에 직·간접적으로 재정 보조를 제공하거나 인·허가 등과 관계되는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함

- ① 직·간접으로 보조금·장려금·조성금을 배정·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
 - ex) 공학교육혁신지원센터 사업 등의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2억원 지원
- ② 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·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 - ex) 취업예정협회 회원사에 대하여 건설업 면허 교부
- ③ 생산방식·규격·경리 등에 대한 검사·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 - ex) 취업예정기관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검역(20건, 6,481톤) 실시
- ④ 조세의 조사·부과·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 - ex) 취업예정기관에 법인세, 지방세 등 2,281건(3,721억원) 부과
- ⑤ 공사,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 - ex) 취업예정기관과 컨설팅 용역 2건(766백만원) 수주
-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
 - ex) 취업예정협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후 협회로부터 감사처분요구사항 이행완료 보고 등 관련 업무 처리
- ⑦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·심판과 관계되는 업무
 - ex) 취업예정기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2건 수사
- ⑧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
 - ex) 주주(9.9%)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안전 의결(3회)

임의취업시? (법 제29조제1호, 제30조제3항)

1) 임의취업하여 재직중인 경우

- ① 공통사항 : 위반사실 법원 통보(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
- ② 사후적인 취업심사를 통해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
 - '취업제한' 결정 및 취업해제조치
 - 고발여부 심사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↳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(시행령 제19조제2항)

2) 임의취업 후 퇴직한 경우

- 위반사실 법원 통보(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
- 사후적인 취업심사를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고발여부 심사
- ↳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(시행령 제19조제2항)

업무내역서 제출의무란? (법 제18조의3)

→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한 기관(심사대상기관)에서의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함

★ 퇴직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, 2년 경과 후 1개월 이내(2회 제출)

→ 업무내역서 미제출/거짓제출 시 제재

- 위반사실 법원 통보 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취업사실 신고 및 취업이력 공시란?

→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10년간

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

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함

→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

취업이력을 조사하여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

→ 취업사실 1개월 이내 미신고 시 제재

- 위반사실 법원 통보 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